

신청·조회·발급

분류	대분류 전체	중분류 전체	소분류 전체
	기관분류 선택	제공기관 전체	<input type="checkbox"/> 모바일신청 가능서비스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민원서비스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부서비스		취업지원대상자	<input type="checkbox"/> 검색 <input type="checkbox"/> 결과 내 재검색

신청순 | 정확도순 | 가나다순

취업지원대상자 증명(국가유공자등)

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아 취업하기 위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또는 업체 등의 장에게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민원서비스 국가보훈처 · 인증서 필요(본인)

신청



문서확인번호 :



제: 호			
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			
취업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	
	성명	생년월일 (성별)	
	주소	전화번호	
용도		가점비율	
제출처	케이씨컴퓨터관리(주)		
위 사항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.			
지정장 정부공인 지정장인			
※ 유의사항 1.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. 2. 취업 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(http://job.mpsva.go.kr)에서 제공되는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			
우:	주소:	전화:	
담당부서명:	보훈과	전자우편:	

◆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, 정부24(www.gov.kr)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)

구 분	입 력 방 식
신청절차	1. 정부24(www.gov.kr) 2. 서비스 3. 신청 · 조회 · 발급 4.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5. 로그인 후 발급
비 고	하단에 정부24에서 발급받았음이 명시되어야 하며, 상단에 문서확인 번호가 명시되어야 함